2018년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8년 12월 26일(수)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지원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현 기 공보관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43호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 제1호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된「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네 차례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여러 위원들은 향후 물가목표수준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반영하고 설명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대상지표 및 제시방식 변경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되 정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 이행상황등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만, 일부 위원은 적용기간과 점검주기의 차이에 대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실질적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 도입한 정기 점검의 취지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설정에 관한 당행의 입장을 정리한 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동 협의과정 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안을 부의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붙임과 같이 설정함. <붙임>「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의안 제44호 -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위원협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동 위원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고 보고하였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올해에 비해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물가전망 부분에는 변화 요인을 추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국내물가를 서술한 부분에서는 내년 중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 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정부와의 물가안정목표 설정 관련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물가설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적절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택매매가격 전망과 관련하여 '오름세 둔화'라고 서술한 초안의 표현을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 외에도 위원들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글로 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 국제기구 협의체 논의 참여 등에 관해 서술한 부분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생략)